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3년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업승인 신청일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8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4호, 2019. 7.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일부개정

제3종시설물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한다.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시설물의 총괄청 인계로 지정 해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14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4호, 2020. 9. 23.)」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개정취지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 도서산간지역으로의 추가배송비 등과 같이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상품정보과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바,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이러한 상품정보와 거래조건을 사전에 제공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로 ‘배송비용(도서산간 지역 추가비용 포함)’을 추가

나.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제공 항목 추가

- 1)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상품정보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명칭’, ‘사용상 주의사항’,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을 별도 품목으로 신설함
  - 2) ‘자동차용품’ 품목 중 첨가제·촉매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검사합격증 번호’를 표시하게 함
- 다.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명칭과 표시기준 등의 변경사항 반영
- 1) KC 인증 표시항목과 관련한 근거법률명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현행 법률명과 일치되도록 함
  - 2) 식품류의 표시사항을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등에 따른 표시사항과 일치되도록 수정함
    - 가) 근거법률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축산물이력법’과 같이 현행 법률명과 일치되도록 함
    - 나) ‘포장단위별 용량(중량)’을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으로 변경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의 ‘내용량’의 의미와 일치되도록 함
    - 다) ‘제품명’,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의 표시항목을 추가하고 ‘품질유지기한’과 ‘표시광고 사전심의’ 등의 표시항목을 삭제하는 등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표시사항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함

3.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행정안전부고시제2020-4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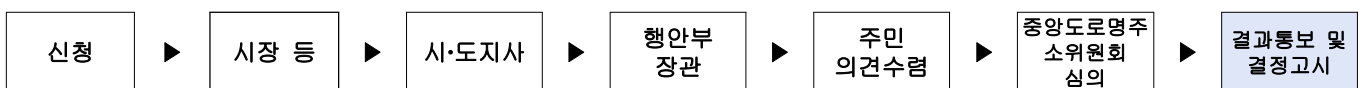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결정

- 1. 고시일: 2020. 9. 18.
-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 3. 고시내용: 도로명 신규 부여 2건(붙임 조서 참고)
- 4. 도로명 부여 절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54(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